

의 정 정 보

2006 - 5 7. 31

- ❶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입법정보, 타시·도의회동정, 베스트셀러 등을 수집·정리하여 의원님께 제공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 ❷ 道의회홈페이지 「의정법제-의정정보」 코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I. 최근 제·개정 법령	1
II. 타 시·도 의회 동정	6
<부록> : 행복한 책 읽기	7

I. 최근 제·개정 법령

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06.5.24 시행)

① 제정이유

-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 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소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투표권자(법 제3조)

-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함.

나.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법 제7조)

- (1)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함.
- (2)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함.
- (3)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서명인 수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00분의 15 이상,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함.

- (4)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 시·군·자치구 전체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3분의1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00분의5이상 1000분의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함.

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법 제8조)

-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인 때,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라. 서명요청 활동의 제한(법 제10조)

-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입후보예정자의 가족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등은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마.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법 제13조)

- (1) 주민소환투표일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함.
- (2) 주민소환투표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령 및 국회의원선거는 제외),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법 제21조)

-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

사.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법 제22조)

-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됨.

아. 주민소환투표의 효력(법 제23조)

-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자. 주민소환투표소송 등(법 제24조)

-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소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② 모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 ('06.6.8 시행)

① 개정이유

-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제7703호, 2005.12.7공포, 2006.6.8시행)되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질병을 가진 자의 범위 및 산후조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건강진단(영 제16조 신설)

- (1)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 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및 건강진단의 실시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를 접촉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을 포함하도록 함.

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영 제16조의2 신설)

-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어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자의 기준으로서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이 있는 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염병 외에 위장관계 질환, 호흡관계 질환 및 안과질환 등이 있는 자를 그 질병의 치료기간 중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도록 함.

③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06.6.8 시행)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및 별표 2)

-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임신부 및 영유아 1인당 일정 면적 이상인 임신부실 및 영유아실을 갖추도록 하며, 급식시설 및 세탁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나. 산후조리업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 및 제18조의3 신설)

-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건물평면도 및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원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폐업·휴업 또는 재개시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다. 산후조리 교육(제17조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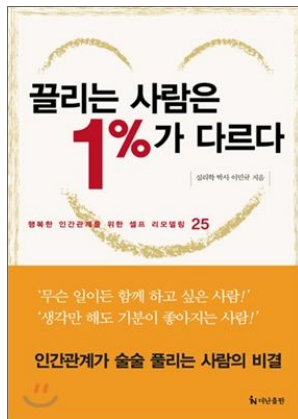
- 산후조리업자는 2년에 1회 이상, 8시간 이상 산후조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예방, 감염관리 등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하며,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기 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자는 신고 후 3월 이내에 산후조리 교육을 받도록 함

II. 타 시·도 의회 동정

① 전라남도의회,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특별법 제정 건의

- 전라남도의회는 그 동안의 낙후와 소외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롭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변화하기 위해 개도이래 최대의 개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유치를 위해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특별법」을 제정토록 중앙에 건의했다.
- F1 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라 할 수 있는 대회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세계 6대 자동차 생산국으로서의 위상제고는 물론,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경제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 동안 전라남도에서는 F1 대회 유치를 위하여 대회 주관사인 FOA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회유치를 합의하고 최종적인 계약만 남겨놓고 있다.
- 그러나, 대회유치를 위하여는 개최권료 3,400억원, 경주장 건설비 2,300억원 등 총 5,7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데, 전남의 재정여건을 감안 할 때 대회유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F1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그 개최효과가 비단 전라남도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소비를 촉발시키는 등 막대한 국가경제 파급효과와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이념 구현에 기여 할 수 있으므로 F1 대회 개최에 따른 각종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였다.

<부 록> : 행복한 책 읽기



- 도서명 :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 저자명 : 이민규
- 출판사 : 더난출판사
- 출판년 : 2005년
- 페이지 : 259 쪽

인생의 성공 뒤에는 끌림이 있다

실업률이 사상 최악이라고 말하는 시기에도 대기업에 척척 붙는 사람이 있다. 남들은 연봉 삭감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승진을 하고 인센티브를 챙긴다.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능력이나, 성실한 자세, 운이 아니라 호감 즉, ‘끌림’이라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니얼 카너먼은 말한다. 인간은 객관적인 수치와 정해진 매뉴얼대로 결정하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CEO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도 대인지능이라고 한다. 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에 한국의 최고경영자 527명에게 ‘CEO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지능이 무엇이었나?’를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대인지능’이라는 답변이 1위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교류할수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남들이 골머리를 썩는 문제도 척척 해결한다.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도 안 되는 일로 진땀을 빼는 사람은 어딜 가든 나쁜 사람을 만난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봐도 나는 한심해!”라고 말하는 부류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등을 돌리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른 사람 탓만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에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이 책은 서른이 넘어서도 마흔이 지나서도 현명해지지 못하는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행복과 성공을 위한 인간관계 개선 프로젝트!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실패한 삶이든 성공한 삶이든 모두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최선을 다 했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제일 먼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돌아봐야 한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이 직장에 불만을 느끼고 전직이나 이직을 고려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돈이나 회사문제가 아니라 직장 안에서 느끼게 되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자료가 보고되었다.

입사 후 3년차 까지 퇴사하는 가장 큰 이유도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크고 작은 비즈니스 문제부터 가족간,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관계의 문제가 있다. 또한 가벼운 우울증에서부터 심한 정신병까지 모든 심리장애에도 관계의 문제가 있다. 우리 삶의 모든 일 뒤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씨줄과 날줄처럼 얹혀 있다.

인간관계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주제로 쓴 이 책은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위한 인간관계 개선 프로젝트이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의 관계 패턴을 돌아보고 보다 효과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실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쿠바와 주말농장

혹시 쿠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쿠바는 농약이나 화학비료, 농업기계의 대부분을 소련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다가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더 이상 수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농약도 없고 비료도 없어서 농업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농약과 비료 없이 농사를 짓는 유기농업으로 전환을 하게 됐는데 성공했습니다.

쿠바는 80년대에 식량자급율이 40%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25%입니다. 쌀을 빼면 5%도 안 됩니다), 90년대 들어서는 100% 입니다. 그것도 유기농산물로 말입니다. 말하자면,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쿠바에서는 도시민들도 농사를 짓습니다. 작은 땅이라도 있으면 놀리지 않습니다. 내가 먹을 것은 내 손으로 가꾼다는 생각이 보편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말농장입니다.

주말농장은 일주일에 한두번 가서 물도 뿌려주고 풀도 뽑아주고 흙을 골라주고 하면 됩니다. 한 귀퉁이에 상추, 시금치, 치커리 같은 푸성귀를 심어두면 갈 때마다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고추 대여섯대를 심어두면 여름 내내 심심하지 않게 따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감자, 고구마, 땅콩 같은 것을 심어두면 별로 손을 타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북쪽 방향 테두리로 옥수수를 심습니다.

그러면 해충들이 옥수수로 몰려들어서 다른 작물에 참 좋습니다. 여름까지 수확을 하고 나면 김장배추와 무우를 심으면 됩니다.

주말농장은 특별한 농사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지 조그만 땅만 있으면 되니까요.

한국인이 꼭 먹어야 할 10대 밥상

한국인이 꼭 먹어야 할 비타민 10대 밥상



KBS 한국방송 2TV · 비타민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 5분 ~ 11시 15분



마늘 암예방

하루 반쪽, 꾸준한 마늘
섭취가 암을 50%까지 예방

보리 정력증강

최고의 자연식 강장제!
말초신경 활동 증진, 기능 향상



콩 당뇨병예방

콩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급격한 혈당상승을 억제

부추 활성산소 해독

항산화 작용 베타-카로틴이
노화의 원인 활성산소 발생 억제



고등어 심장병예방

주 2회 고등어 섭취! 불포화
지방산이 혈액 청정, 혈액순환

김 시력보호

눈의 비타민인 비타민A가 시력보호,
야맹증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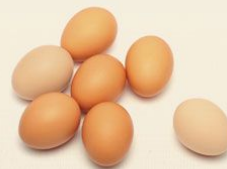


호두 노화억제

비타민E가 노화를 억제!
하루 한개의 호두는 무병장수의 비결

달걀 두뇌개발

노른자에 든 뇌의 먹이
레시틴이 기억력 증진, 치매 예방



버섯 다이어트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이는 식이섬유가 과식 억제

풋고추 면역강화

비타민C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
증진! 하루권장량 풋고추 2개면 OK!



<http://www.kbs.co.kr/2tv/vitamin/>